



##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 Korean Tax Newsletter

2023년 9월

[세법개정](#) | [과세관청 소식](#) | [예규·판례](#) | [Contacts](#)

#### • 예규·판례

##### 가. 2020년 이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조심 2022 서 7020, 2023.08.21)

###### ▣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000 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000 원을 반영하여 2020년 제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관련 외상매출금 000 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2.6.13.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00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 쟁점

2020년 이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 판단(취소)

처분청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 제 1 항에 따라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 제 9 호의 2 의 시행 이후에 회수기일부터 2 년이 도래하는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쟁점채권은 이미 2 년이 경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 제 9 호의 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 제 9 호의 2 에서 회수기일이 2 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 제 9 호의 2 의 시행 이후 2 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국세청 서면 2020 법령해석법인 2501, 2020.10.26.)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 년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 제 9 호의 2 에 따라 2020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7 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 (조심 2022 서 1815, 2023.09.12)

### ■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1987년 6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AA 등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하고, 고객이 상품의 대가를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① 해당 상품의 결제대금에서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청구(이하 “청구할인”이라 한다)하거나, ② 결제일이 속한 월의 익월에 고객계좌로 카드사에서 직접 현금을 입금(이하 “캐시백”이라 한다)하는 방식의 할인제도(이하 청구할인과 캐시백을 합하여 “쟁점할인”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할인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 할인액과 관련하여 업무제휴계약 등에 따라 정산한 청구법인, 신용카드사 또는 제조사 분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위 할인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할인액 중 청구법인이 분담한 금액만을 에누리로 인정(환급)하고 ‘나머지 할인액 (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 쟁점

-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판단

- 청구법인은 상품 할인판매를 위해 카드사 및 제조사와의 사전 업무제휴계약 또는 행사공문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으로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통상의 상품 대가에서 일정액을

할인하고 그 할인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해당 약정에 따라 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 할인금액을 정산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사전에 청구할인 약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한 할인을 상당액을 공제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할인된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과 카드사 등이 이러한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고객 확보와 상품판매 증대 등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카드사 또는 제조사가 쟁점할인액을 부담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카드사 등이 고객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카드사 및 제조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처분청은 일부 제조사 부담 캐시백의 경우, 사전 할인약정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비록 청구법인과 제조사 간에 체결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제조사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할인부담액 정산 서류 등에서 사전에 묵시적인 할인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되므로 사전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서면-2022-법규법인-3938, 2023.09.05)**

#####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으로 '20년에 '18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사후관리 1년 유예되어 '18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음.
- 질의법인은 '21년에도 '18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18년 대비 '20년 감소 인원 보다 '21년에 더 많이 감소함.

##### ■ 질의내용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1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 안) '21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대로 추가 납부

(2 안) '20년에 납부하여야 할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 납부

##### ■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귀 질의의 경우 2 안이 타당함

**라.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09.05)**

■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제 2 항 제 1 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 방법

<제 1 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제 2 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1 안이 타당함.

**마.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서면-2022-법규법인-0108, 2023.09.04)**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 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견기업으로 '20 년에 '19 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사후관리 1 년 유예되어 '19 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으며, '21 년에도 '19 년 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음

■ 질의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외」 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수가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 안> 「청년」 및 「청년외」 감소인원별로 구분한 후, 각각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

<2 안>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 감소인원에 대해 「청년외」 공제액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

■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2023.08.28.)

귀 질의의 경우 2 안이 타당함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http://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http://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